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 좌담회

일시 | 2016년 6월 9일 (목) 오후 2시 30분

장소 |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주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그램

- 14:30 사회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경희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 14:35 인사 김한규 서울지방법변호사회 회장
- 14:40 패널1 **법조비리의 해결방안 모색**
이광수 서울지방법변호사회 법제이사
- 패널2 전관예우 문제,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패널3 정운호 사건으로 본 ‘전관예우’**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 기자
- 패널4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서기호 前 19대 국회의원
- 15:40 종합토론
- 16:30 폐회

목차

발제1	법조비리의 해결방안 모색 / 이광수	05
발제2	전관예우 문제,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최영승	17
발제3	정운호 사건으로 본 ‘전관예우’ / 양은경	35
발제4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 서기호	41

법조비리의 해결방안 모색

이광수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I. 법조비리의 범주

법률사건·법률사무의 수임 및 처리와 관련하여 벌어지는 변호사법 위반 양태를 법조비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법조 브로커의 관여와 전관예우 등이 법조비리의 전형이다. 그러나 법조비리에는 이 두 가지 문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양태들이 포함된다.

법조비리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i)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건·법률사무 취급, ii) 변호사 아닌 자와 변호사의 결탁에 의한 법률사건·법률사무의 수임 및 처리, iii) 변호사의 변호사법상 제한·금지된 양태에 따른 법률사건·법률사무의 수임 및 처리, 이상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넓게 iv) 다른 자격사들의 변호사 직역 침탈 시도 역시 넓게는 법조비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들의 변호사 직역 침탈시도는 넓게 i)의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건·법률사무 취급 범주에 포섭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에 따른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 이유는 해당 자격사들의 직무 범위를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서 그 자격사들의 직무 범위를 매우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고, 해당 자격사들이 결성한 이익집단 등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자칫 직역과 직역 사이의 충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는 i)과 ii)가 법조비리의 전형으로 취급되었지만, 최근 가장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범주는 전관예우의 문제가 속하는 iii)의 영역이다. iv)의 영역

은 변호사의 직역이기주의로 매도되기도 하는 영역이어서 법조비리의 근절방안 모색이라는 본지가 가려질 우려가 있으므로 오늘의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그러나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어야만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의 준수 요구가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iv)의 문제 역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은 지적해 두고자 한다.

II. 법조비리에 대한 대응방안 개관

앞에서 본 i)과 ii)는 주로 변호사법 제34조와 제109조를 중심으로 비교적 무거운 처벌이 가해지는 양태이다. 법조 브로커의 관여가 주로 이 두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두 영역은 현행 제도 하에서도 변호사나 변호사단체, 사법기관에서 감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엄한 처벌과 함께 그 수익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법조비리보다는 제도개선의 여지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영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¹⁾ 다만 그 지위를 변호사의 사무직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과하고 통상적인 사무직원으로 규율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브로커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퇴직공직자’들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시급히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

iii)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전관예우의 문제이다.²⁾ 전관예우란 퇴직한 법관이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처리하는 사건에 특별한 배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를 사회정의와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숭고한 직책이 아니라 단지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전관(前官)과 언제든 퇴직하면 자신도 같은 대우를 기대하면서 편협한 집단 의식으로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현관(現官), 그리고 이들을 이용하여 반칙이든 범죄든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전관이용자의 삼위일체 합작품이 바로 전관예우이다. ‘예우’라는 표현은 마치 후배가 선배를 대접하는 동양적 미풍양속처럼 보이지만

1) 물론 현행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와 변호사 자격자를 제대로 구별하지 않고 있는 등 불비한 사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 물론 전관예우는 이 영역의 가장 심각한 비리에 해당할 뿐이다. ‘전관’에 의한 비리 외에 동향, 동기 등의 연고를 이용한 비리도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그 실체는 한마디로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관예우에는 ‘반칙 수준’의 전관예우와 ‘범죄 수준’의 전관예우가 모두 포함된다. 반칙 수준의 전관예우란 대가의 수수를 수반하지 않는 편법적 편의제공³⁾의 정도에 그치는 반면, 범죄 수준의 전관예우는 뇌물의 수수를 수반하는 정도에 이른다. 범죄 수준의 전관예우는 그동안 드라마나 영화에서 극적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었을 뿐, 실제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그러한 통념이 여지없이 깨진 것이 바로 이번에 벌어진 ‘정운호 게이트’이다. 아직 그 전모가 제대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도박죄 형사사건 한 건에 5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거액이 오고가는 상황은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변호사수임료의 범주를 훨씬 넘어서는 금액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⁴⁾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법조비리의 근절을 표방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도입하여 왔다. 2007년에 도입된 전관변호사의 수임사건 처리결과 및 내역 보고 의무화, 2011년의 이른바 전관예우방지법-전관 변호사의 퇴임 전 기관 취급 사건에 대한 1년간 수임 금지-, 2014년의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강화 등이 그 예이다. 2016. 9. 28.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그 실효성에 의문⁵⁾이 제기되거나 조직적 저항⁶⁾이 전개되고 있고, 최근에 벌어진 사태는 위에서 본 현재 시행 중인 전관예우 방지 방안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근거 있는 통찰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비록 정운호 게이트와 같은 범죄 수준의 전관예우는 그 사례가 매우 드물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범죄 수준이든 반칙 수준이든 전관예우의 존재⁷⁾ 내지 전관예우

3) 물론 평가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식사나 주류를 접대하거나 골프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향응 제공은 편의제공의 수준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4) 최변호사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 50억원은 단일 사건의 수임료가 아니라 여러 건의 수임료라는 보도도 있을 것을 부기한다.

5) 예를 들어 송인호, “전관예우 해결 방안에 관한 입법적 고찰”,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6. 420~421면 및 2015. 5. 9. 서울지방법변호사회 주최 「전관예우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심포지엄 등.

6) 본인은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시비의 상당 부분은 그 법의 본래 취지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라고 평가한다.

7) 지금까지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전관예우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단지 일부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가장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부당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기는 현상으로 치부하여 왔다. 그러나 서울지방법변호사회가 2013년과 2014년 연속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들 중 각 67.3%와 64.7%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관예우를 경험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는 재조경력 변호사들의

현상을 이용하려는 사회적 수요와 이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려는 공급 요인이
엄연히 실재하고 있는 이상 전관예우의 문제는 더 이상 현재와 같은 상태로 놓아
둘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

최근 서울지방법변호사회는 전관예우의 근절방안으로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의
도입방안을 입법청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방안은 법관과 검사로 임용된 이
들이 정년에 이르기까지 법관과 검사로 복무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변호사로 개
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만으로 당장 전관예우 등 법조비
리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의 도입을 위해 상당한 준비기간이 불가피한데
그 동안에는 여전히 전관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관에 의하지 않고 자
행되는 법조비리도 무시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비리의 근절방안을
i) 평생법관제 및 평생검사제 법제화 방안과 ii)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두 가
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Ⅲ. 평생법관제 및 평생검사제 법제화 방안

1. 서울지방법변호사회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 법제화 방안의 개요

지금까지의 전관예우 차단방안은 모두 ‘예우’ 차단에 중점을 두었으나, 예우의 차
단만으로는 전관예우를 막을 수 없으므로 아예 전관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하자는
것이 서울변회의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의 법제화’이다. 평생법관제·평생검사
제는 법관이나 검사로 임용되면 정년까지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이미 상당수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서울변회의 법제화방안은 판사(대법관을 포
함) 또는 검사의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법조경력자라고 한다)는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⁸⁾에는
가칭 법조경력자변호사개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개업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분의 2 가량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것은 전관예우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

8) 현재 예정하고 있는 사유로는 무료변론, 무료법률상담 등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공익활동만을 목적으로 하
는 경우 ; 학업, 연구, 저술 그밖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대가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에 종사
하고자 하는 경우 ; 법조경력자변호사개업심사위원회가 이에 준하여 변호사개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판단
하는 경우 등이다.

2011년부터 법관은 10년 이상 변호사경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방식을 채택하되, 다만 한꺼번에 이를 실시할 수 없어서 단계적으로 법관이 될 수 있는 변호사 경력을 높이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법조일원화를 시행하는 뜻은 충분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변호사경력자들을 법관으로 임용한다는 것이 표면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판사로 임용된 후에는 가급적 다시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평생 법관으로 복무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⁹⁾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후에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법관이나 검사로 일하다가 도중에 사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전관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하자는 것이 서울변회의 기본적인 발상이다. 다만 미국 연방법원 판사처럼 종신직이 아니라, 법관은 70세 검사는 65세를 정년으로 하고 임용자격은 10년 이상 경력자로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¹⁰⁾

2.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 법제화 관련 쟁점의 검토

가. 현관 비리 근절로 충분하다는 주장

전관예우는 현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전관의 개업금지가 아니라 현관의 비리를 근절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어째서 지금까지 많은 방안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현관에 의한 전관예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전관예우는 전관과 현관이 합작해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전관예우 근절방안은 전관에 대한 방안인 동시에 현관에 대한 방안이기도 했다. 이러한 방안들이 별로 실효성이 없었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현행 제도에서 어떤 점이 부족해서 현관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관비리든 현관비리든 이러한 비리는 외부에서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이번 정운호 게이트만 하더라도 최변호사의 고소가 없었더라면 아무도 모른 채 넘어갔을 것이고, 홍변호사 역시 그동안 수임내역과 수임액을 보고하였지만 아무런 문제도 제기된 바 없다가 유탄을 맞은 것이다.

9) 법조일원화는 전관예우 차단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고 평생법관제와 관련된다. 평생법관제가 법적 의무가 되어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도구가 될 때 비로소 법조일원화도 전관예우와 관련성을 갖게 된다.

10) 평생법관제 하에서도 법관의 정년을 두는 경우가 종신직으로 하는 경우보다 더 일반적이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¹¹⁾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주장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의 법제화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많은 제약을 가하는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 제약이 ‘지나친’ 제약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한다.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의 법제화가 직업선택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의 제한은 공공복리나 질서유지를 위해서 제한이 가능하다. 법조경력자들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경우 비록 당사자가 되는 법조경력자들에게는 직업 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초래될 수 있으나, 이러한 기본권 침해는 전관예우 폐해의 근원적 차단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법조경력자들의 불이익은 i) 판사·검사의 정년을 연장하면 그에 따라 급여와 퇴직 후 연금수혜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현재도 월 450만원 남짓), ii) 이 정도로 부족하다면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전관예우로 우리 사회가 부담하게 되는 음성적 사법비용과 정의감 상실로 인한 국민통합의 저해 등 여러 가지 폐해들보다 훨씬 가벼운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 iii) 지금과 같이 법조경력자들이 그 경력을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수입료를 받아 챙기는 잘못된 현상을 기준으로 법조경력 변호사의 기대수익을 설정할 수는 없다는 점, iv) 서울변회의 방안은 법조경력자들의 변호사 개업만을 금지할 뿐 대학에서 후진을 양성하거나 상임조정위원 등 그 연륜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불이익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판사나 검사의 소신을 저해한다는 주장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가 법제화되면 소신판사나 소신검사가 나오기 어렵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수긍할 수 없다. 소신이란 신상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옳다고 믿는 바를 행동에 옮기는 것을 의미하지 수틀리면 변호사로 개업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대로 판결이나 결정을 내리는 것을 소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정년까지 판사나 검사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상

11) 직업 수행의 자유를 포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부나 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소신판사·소신킨검사에 대한 재임용 탈락, 부적격판단 등의 문제는 판사나 검사의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를 반대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라. 판사와 검사의 체제가 다르다는 주장

검사는 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생법관제와 법조일원화 체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평생법관제처럼 평생검사제를 시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서울변회의 방안은 검사의 직급 폐지와 10년 경력자 검사임용제의 도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후배가 승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연륜 있는 선배검사들이 줄줄이 퇴직하는 기수문화는 사라져야 한다.

마. 외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리한 방안이라는 주장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의 ‘법제화’는 전관예우라는 불법양태에 대한 처방이다. 이러한 불법양태가 우리나라에 특유한 풍토병인 이상, 다른 나라에서 법률로 법관과 검사의 평생복무를 강요하는 예가 없다는 주장은 우리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다.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울변회의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 법제화 방안에 대한 지금까지의 비판은 상당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철학적으로 다른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오해는 극복되어야 하고, 어느 관점을 선택할 것인지는 국민의 몫이다.

Ⅳ.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¹²⁾

1. 변호사법상 제도개선방안

가. 전관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 정비

(1)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¹³⁾

(2)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부터 제5항¹⁴⁾

나. 전관변호사의 활동내역 보고의무 강화¹⁵⁾

다. 수임 제한 대상의 확대¹⁶⁾

라. 과다보수에 대한 철저한 감독¹⁷⁾

마. 전관변호사의 위법·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강화¹⁸⁾

바. 선임서등 제출의무의 확대¹⁹⁾

사. 퇴직공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²⁰⁾

12) 이 부분은 위 서울변회 심포지엄에서 본인이 발표한 방안들에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의 보완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13)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공동법률사무소를 포섭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14) 수임제한기간의 연장, '공익'목적이라는 불확정 개념 보완, 민법 제767조 소정의 친족범위 축소, '재판연구원'의 포섭, '국가기관'의 범주 보완 등이 필요하다.

15) 법조윤리협의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유기관인 지방변호사회의 감독권을 허용하여야 한다.

16) 법률사건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법률사건을 처리하면서 자문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탈법을 포섭할 필요가 있다.

17)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수임료가 더 이상 당사자의 사적 자치 영역에 머무르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과다보수를 금지하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의한 적절한 규율이 필요하다.

18) 전화변론 등 전관예우의 상대방이 되는 검사나 법관 등에 대하여 직무관련 접촉사실보고의무 도입하고, 선임서등 미제출변론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율해야 한다. 이는 단지 제재의 수준을 강화하는 것 외에 범죄로 인한 이익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는 의의가 있다.

19) 법원, 검찰만이 아니라 변호사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변호사법 제3조, 제29조 참조)이 모두 포섭되어야 한다.

20) 이들을 사무직원으로 파악하여 변호사단체가 관여할 여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이들의 활동내역 신고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감독이 필요하다.

2. 법원조직법이나 민·형사소송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의 개선방안

- 가. 공무원의 변호사접촉 신고의무 제도화²¹⁾
- 나. 선임서등 미제출변론행위에 대한 협조금지의무 신설²²⁾
- 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보장방안 강구²³⁾
- 라. 법관평가의 법제화²⁴⁾
- 마. 연고변호사 수임사건에 대한 재배당 기준의 세분화와 재배당 신청권 도입²⁵⁾
- 바. 기피신청 제도의 보완²⁶⁾
- 사. 종결된 사건기록의 전면공개²⁷⁾
- 아. 취업제한 대상 법무법인 등의 외형거래액 하한 하향조정²⁸⁾
- 자. 법관인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검찰시민위원회 등의 체질 개선²⁹⁾
- 차.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개정³⁰⁾

21) 2014. 3. 13. 서기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703호)의 확대 수정방안이 필요하다.

22) 이를 어길 경우 제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미제출변론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3) 구성의 이질화는 구성원 상호간의 견제를 가능하게 한다. 2015. 5. 22. 서기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241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4) 법관평가제는 평생법관제 도입시 정년 속에 안주하는 무사안일법관에 대한 효과적 통제방안이 될 수 있다. 검사평가제 도입은 아직 정착단계가 아니어서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장차 변호사의 수사참여와 고소 대리사건의 수임이 변호사의 소송대리처럼 일반화된다면 검사평가제 역시 제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5) 2015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개선방안은 검사 또는 고소인, 고발인에게도 재배당 신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6) 고소인, 고발인에게도 기피신청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기피신청사건을 전담하는 독립 재판부 또는 국민참여재판부의 구성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27) 개인정보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기록을 전면 공개함으로써 특정 사건의 편파적 불공정 처리에 대한 외부의 감독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8) 법률시장이 일반 경제규모에 비하여 훨씬 적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퇴직법관의 취업제한 대상을 일반 기업에 출액과 같은 수준으로 규율하는 것은 지나치게 느슨하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29) 이러한 조직에 관여하는 외부 인사를 단순히 명망가가 아닌 해당 분야 전문가 특히 변호사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의 관여를 보장하여 질적 개선을 도모하여야 거수기 전략을 방지할 수 있다.

30) 공직자윤리법에서 '실질적 관여'의 범주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위규범은 법률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3.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자치성 및 책임 강화

법조비리가 마치 변호사계 내부의 잘못된 관행이나 일부 잘못된 변호사들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법조비리의 상당부분은 변호사를 치부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변호사들에 의해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나, 또 다른 상당부분은 변호사계 외부에서 비롯된다.

근대적 사법체제는 모든 법률사건·법률사무의 처리를 변호사에게 전속시키는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변호사의 관리를 위하여 변호사단체에 자율성·자치성과 책임을 부여한다. 그러나 우리의 사법체제는 아직도 변호사단체에 대한 타율과 외부의 간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변호사의 등록이나 징계 등의 과정에 변호사가 아닌 외부의 관여가 오히려 법조비리에 대한 온정주의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재조시절 비리를 저지르고도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한 후 변호사를 개업하는 이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해 주는 것은 외부 인사들이 관여하는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이다.³¹⁾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대형 로펌 중심의 탈법행위는 변호사계 내부의 자율정화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지 않는 변호사단체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변호사단체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는 맹목적 불신은 오히려 법조비리의 또 다른 온상이 될 우려가 있다. 퇴직공직자들을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영입하여 불투명한 활동을 시키는 것이 전자의 문제라면, 시민단체에 의한 변호사안내제도 도입 운운은 후자의 문제이다. 전자는 변호사단체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문제인 반면, 후자는 변호사단체의 자율성과 자치성 보장을 위하여 차단되어야 한다. 실비변상으로 포장된 안내 대가의 수수는 법조 브로커의 합법화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71420001&code=940301 참조(2016. 6. 6. 최종 방문). 첫 번째 사안에서 서울변회는 항응과 성접대가 ‘뇌물’에 해당할 수 있어 직무 관련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퇴직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항응의 뇌물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성범죄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개정 전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엉뚱한 판단을 하였다. 두 번째 사안 역시 재직 중 비리 해당 여부에 관하여 검찰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퇴직한 사안인데, 서울변회의 부적격의견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등록이 허용되었다.

V. 결론

2011년 전관예우방지법 도입 당시에도 상당수의 법조인들이 그런 제도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했었지만, 제도 도입 이후 5년 정도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위헌이나 아니냐의 논쟁보다 오히려 그 정도의 제한만으로 전관예우가 없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으로 쟁점이 옮겨졌다.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의 법제화 역시 현재 국면에서는 위헌의 논란을 피할 수 없겠지만 그 필요성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위헌시비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의 도입 여부는 정답과 오답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다. 서울변회는 지금 당장 제도를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2020년 정도를 시행시점으로 예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문제들은 제도 도입 후 시행을 준비하는 동안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가 정해져야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물론 서울변회는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의 법제화만으로 모든 법조비리가 근절된다고 보지 않는다. 이 방안은 법조비리의 심각한 양태 중 하나인 전관예우에 대한 처방일 뿐이다. 나머지 다른 양태의 법조비리에 대해서는 다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그 방안들은 Ⅲ의 2와 3항에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제도화된다면 법조비리의 문제는 더 이상 불치병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단체가 이렇듯 법조비리의 근절을 위한 자발적 노력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이 면기난부(免飢難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조성도 필요하다. ‘의식이 족해야 예의를 안다(衣食足而知禮節)’는 이치는 변호사들이라고 다를 수 없다. 굶주린 변호사는 사자보다도 무섭다고 하지 않던가. ☆

전관예우 문제,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최영승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I. 의의 및 관점의 확대

1. 연고주의와 전관예우

최근 홍만표 변호사와 최유정 변호사의 그릇된 사건 수임행태에서 드러난 법조계의 전관예우로 인한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두 사람 모두 검사 및 법관이라는 전관이라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지만 소수가 다수의 법률시장을 왜곡함에 의하여 여러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전관예우의 문제는 비단 법조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행정직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법조지역의 그것은 다른 직역에 비하여 더욱 유형화되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전관예우가 항상 기대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³²⁾ 따라서 여기서는 전관예우를 법조지역의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32) 한상희, 헌법문제로서의 전관예우 방지-공직 권력의 사유화와 그 헌법문제-, 『헌법학연구』 제17권 제4호(2011. 12.), 97면.

2. 전관예우의 문제점

전관예우가 문제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전관의 영향력에 의하여 사법권이 사유화됨으로써 사법정의가 부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변호사 보수의 왜곡이나 소수의 전관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싹쓸이함으로써 법률시장을 왜곡시켜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한다. 셋째, 선임제 없는 변론(이른바 전화변론)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탈세 등과 같은 또 다른 불법문제를 초래한다. 넷째, 법조 엘리트에 의한 권위주의 문화를 공고히 하여 사회전반의 권위주의 문화타파에 장애요인으로 기능한다.

3. 해결책에 대한 관점의 확대

전관예우의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여러 해결책이 제시되어 왔으며 그 중에는 상당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전관예우의 특성상 발견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이 워낙 커서 쉽게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케 하는 주체는 현직 판사·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우의 대상인 전관변호사의 문제로만 보아 그 해결책을 모색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대응방법 또한 유용하다는 전제하에 여기서는 전관예우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달리하여 그 주체의 문제로 접근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이렇게 현관을 중심으로 놓고 접근하면 부수적으로 로스쿨제도와 더불어 회자되고 있는 이른바 ‘후관예우’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II. 전관예우 관련 주요국의 현황

1. 독일

공무원지위법은 퇴직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 후 영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관련업무 또는 재직 중 행하였던 업무를 행할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신고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련업무 취업금지 기간은 퇴직 후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제41조).³³⁾

독일의 법관제도는 한번 임용되면 30~40년 동안은 근무할 수 있는 종신제이므로 상급자의 눈치를 볼 것 없이 양심에 따른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퇴직법관들의 많은 수가 대형로펌 및 기업체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기도 하지만, 이는 전관예우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자질 및 경륜에 따른 선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송실무에서 보면 전관들이 담당하는 소송이라 할지라도 높은 승소율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법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법관과 변호사 간의 친분 등을 이유로 자신의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법원에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의 경우 또한 그 신분보장에 있어서 법관과 별반 다를 것은 없으며 실제로는 주로 공소제기 및 수행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므로 전관예우가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 것 같다.

2. 일본

일본의 경우 검사 및 법관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국가공무원법으로 재취직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재취직자에 대한 압력규제(제104조의4), 재취직 등에 대한 규정으로 재취직 알선의 규제(제106조의2), 재직 중의 구직활동의 규제(제106조의 3), 퇴직직원의 압력규제(제106조의 4)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및 징계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규제의 대상은 검

33) 법문상으로는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규제 조항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관련하여 침해 관련 소송이 빈번하다고 한다. 그 결과 실제 판결 사례에서는 공무원지위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관련업무로 신고 한 후 금지 처분을 받은 때에도 소송을 통하여 상급심에서 이를 번복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찰관, 법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그 대상이다. 일본에서도 전관예우가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문제된 사례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미국

전미변호사협회(ABA)에서 마련한 법조윤리규정은 변호사는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ule 8.4(a)). 또한 법관은 ① 진행 중인 사건의 일방 당사자와 직접적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Rule 2.9), ② 법관이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 후원,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 특정 사건 관련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생기거나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법관 스스로 사건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ule 2.11).³⁴⁾ 변호사에 대하여는 공무원으로 일했던 변호사가 해당 업무와 직접적 또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에 고객을 변호하지 못하고(Rule 1.11), 법관 또는 재판연구원으로 일했던 변호사는 ① 근무 중 직접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을 변호할 수 없다(Rule 1.12) 등이다.³⁵⁾ 검사의 경우 전관예우에 관한 언급은 없고 피의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한 것만 있을 뿐이다.³⁶⁾

그러나 전관예우는 그 행위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몇몇 제도에 의하여 이를 추측해 보건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사법구조와 관련하여 그 이유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와 법관의 인사제도 및 변호사 활동 실태 측면에서이다. 먼저 법관의 경우, 미국은 10~20년의 법조 경력을 갖춘 후에 법관으로 임용되어 정해진 퇴직연령 없이 종신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법관직은 성공적으로 변호사, 검사로서 경력과 평판을 쌓은 자들이 임명되기 때문에 법조 경력의

34) http://www.americanbar.org/groups/professional_responsibility/publications/model_code_of_judicial_conduct.html.

35) http://www.americanbar.org/groups/professional_responsibility/publications/model_rules_of_professional_conduct/model_rules_of_professional_conduct_table_of_contents.html.

36) http://www.americanbar.org/groups/professional_responsibility/publications/model_rules_of_professional_conduct/rule_3_8_special_responsibilities_of_a_prosecutor.html.

정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조금 일찍 퇴직하는 경우에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풀타임 근무보다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로 법원에서 계약직 등으로 근무하면서 법원의 과중한 업무를 일부 맡거나 법률지식을 살려 봉사단체 등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

검사의 경우 장기간 재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통상적으로 2~3년 후 로펌이나 공익 변호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 의회 의원이나 선출직 등의 공직을 희망하므로 전관예우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장기재직 후 변호사 개업)을 갖추지 못하여 전관예우가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것 같다.

둘째, 주의 법관과 검사는 대부분 주민선거 또는 주 의회의 승인을 통해 임명함으로써 항상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환기시켜 업무처리시 평판에 민감하도록 한다.

셋째, 모든 소송과정이 철저히 당사자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법관의 경우 배심제의 존재로 인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개입할 여지는 거의 차단되며, 개별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판단이나 법률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을 배심원들에게 설명해주는 역할에 그친다. 이러한 특성은 미국식 당사자주의와 결부되어 판사들이 철저하게 중립적인 성향을 갖게 한다. 검사의 경우 제한된 인력으로 공소제기 및 수행에 집중하며 배심제로 인해 법정에서의 역할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데서 역시 전관예우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Ⅲ. 문제된 대표사례 및 그 동안의 해결 노력

1. 전관예우의 대표사례

(1) 의정부 법조비리 - 법관출신 전관 사건

1997년 의정부 지역에서 드러난 법관출신 전관에 의한 법조비리 사건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재직하다 1995년 6월 의정부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뒤 2년 6개월 동안 210건의 사건을 수임하며 의정부 지역의 형사 사건을 독식했으며, 1997년 5월 한 달 동안에는 의정부지청의 구속사건 1백 70건 가운데 40건을 맡아 사건 수임률 1위를 기록했다. 1997년 9월부터 의정부지청의 법조브로커 단속 과정에서 이 변호사의 사무장이 경찰서 유치장에 머무르며 70%의 사건을 싹쓸이한다는 정보가 입수되면서 사건이 발단되었다.

검찰은 법관 15명이 관내 변호사들한테서 수습 혹은 수차례에 걸쳐 930만원~140만원의 돈을 받았고 10명의 법관들은 이 변호사와 함께 룸살롱에 드나들었다는 혐의를 확인해 관행적 비리라는 명분 및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여 “징계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비위사실이 확인된 판사 9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지원장을 포함한 38명의 의정부지원 소속 판사들을 전원 교체하는 한편 법원행정처장이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검찰 역시 대검찰청 차장의 사과와 함께 금전거래를 한 검사 등 2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12명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씨를 제명한 것을 시작으로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그로부터 2년 10개월 후인 2000년 8월 29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2년 10개월 만에 끝났다. 현재 이 변호사는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대전 법조비리 - 검사출신 전관 사건

1999년 대전 지역에서 드러난 검찰출신 전관에 의한 법조비리 사건이다. 이○○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 부장검사로 재직하다 1992년 대전에서 개업하여 현직 법관·검사를 비롯 검찰, 법원직원, 경찰관 등 300여 명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면서

사건을 수입해 온 것을 전 사무장이 비밀장부 등 632장을 MBC를 통하여 폭로함으로써 세간에 알려진 사건이다. 검찰 수사결과 25명의 검사들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검사장 2명을 포함, 검사 6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7명에 대해 징계 조치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며 수사를 마무리했으며 판사 2명 또한 사표를 냈다.

대법원은 2002년 3월 15일 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의 이○○에 대한 법리를 인용해 변호사법위반과 뇌물공여죄를 모두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이후 2004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재개하여 최근 2016년 2월 사망 시까지 변호사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전관예우 해결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

(1) 공직자 윤리법

법조 전관예우와 관련하여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제18조의4제1항).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이를 위반 시에는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2) 변호사법상의 수입제한(이른바 ‘전관예우방지법’, 2011. 5. 17. 신설)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

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렇지 않다(제31조제3항).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①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 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②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③ 법무법인 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이다.

(3) 법조윤리협회의 설치

변호사법 제88조에 근거하여 법조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27일 법조윤리협회를 설치하였다.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법조윤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변호사법제8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윤리협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동조제4항).

(4)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행동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행동강령』에도 전관예우와 관련한 내용들이 있다. 먼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사유로 ① 자신의 친족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②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③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④ 법원행정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³⁷⁾인 경우 등을

37) 직무관련자란 행동강령 제2조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 대리인 및 변호인(그

규정하고 있다(제4조). 또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제5조),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제9조의2)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8조).

(5) 검사윤리강령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1998년 제정에 착수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검사윤리강령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검사는 변호인의 변호권 행사를 보장하되 취급 중인 사건의 변호인 또는 그 직원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하며(제11조),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고 그 처신에 유의하며(제14조),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사건 관계인 등’이라 한다)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으며(제15조), 검사는 항상 공사를 분명히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다(제16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 보아 최소한 전관예우 문제에 대하여는 충분히(오히려 과도할 정도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 변호사 윤리장전

변호사 윤리장전은 변호사가 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관계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지 않는다(제38조)고 규정하고 있다.

사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조).

(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2016. 9. 28. 시행)

이 법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제7조제1항), 공직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위 신고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21조).

IV.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제언

1. 평생검사·평생법관제의 추진

현재 검사 및 법관의 정년은 일반검사 63세, 검찰총장 65세(검찰청법 제41조), 일반법관 65세, 대법관 및 대법원장 70세(법원조직법 제45조)으로, 일반공무원의 60세(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보장받고 있다. 또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으며(헌법 제106조), 검사 또한 검찰청법(제37조)에서 유사하게 규정하여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확실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 이는 검사나 법관의 경우 이미 거의 평생토록 근무한 후 명예롭게 퇴직하는 구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제 퇴직은 일반공무원의 경우 정년까지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데 반하여 검사나 법관의 경우 정년을 제대로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여도 충분히 경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거나 혹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퇴직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인 것이다.

전관예우에 대한 현행의 여러 제한이라는 것도 부분적으로 타당한 해결책에 불과

해 보인다. 따라서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평생직사·평생법관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⁸⁾ 그것이 또한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공무원제도의 근간과도 일치한다. 나아가 이 제도를 수용하되 이로 인한 철밥통의 양산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지만,³⁹⁾ 이는 직업공무원제와 사법부의 역할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2. 검사의 역할 변화 - 공소수행기관으로 거듭나야

형사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사출신의 변호사가 독차지하고 있다. 이는 구속사건이나 특수수사사건에서 사건 초기에 전관변호사를 통하여 구속을 면하거나 범죄의 성립범위를 줄이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사건에서 전관변호인은 수사기관의 경우에 한정하거나 혹은 경찰영장신청에 있어서 검사단계에서의 영장검토의 경우에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부분변호의 대부분이 전관예우를 기대한 사건약정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관변호사로서는 그것만큼 고효율이 없다는 점에서 전관을 내세운 사건수임의 유혹에서 쉽사리 헤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추측된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특히 검사 전관이 문제되는 것은 바로 검찰의 수사기관적 성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수행기관에 불과하다면 애초부터 전관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게 될 것임은 미국 등의 다른 국가의 예에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제기기간으로의 역할변화는 지금까지 주로 거론되어 온 사법경제적인 측면에서 나아가 사법정의의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이다.

3. 배심재판의 활성화

검사전관 변호사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검사제도가 공소제기 및 공소수행기관으로 거듭나야 함에 대응하여 법원단계에서는 배심재판의 적용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배심재판에 따른 전관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배심원들의 평의에 대하여 현행의 권고적 효력에서 그치지 않고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

38) 같은 취지 한상희, 각주 1)의 글, 123면.

39) 신평, 전관예우의 근절책,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43집(2013. 8.), 20면.

하다. 상소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재판을 행하면서 법원이 이를 반복하게 하는 것은 상소제도나 배심제도 모두의 취지에 맞지 않다. 배심원의 평의에 대하여 기속력을 부여하면 전관변호사에 의하여 사실판단의 단계에서 유죄가 무죄가 되는 이른바 ‘유전무죄’ 현상은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최근 정운호 게이트에서 보는 것처럼 보석을 빌미로 한 전관의 개입이나 집행유예 남용의 문제는 뒤에서 보듯이 재판의 시스템 변화에서 여과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배심재판의 기속력 문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와의 관계에서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다.

4. 수사·재판시스템의 변화 추진

검찰단계에서 전관예우가 많이 개입하는 부분은 구속수사나 혹은 대부분 구속수사재판으로 이어지는 특수수사의 경우이다. 구속이 곧 형벌이나 유죄로 인식되고 있는 잘못된 문화 속에서 구속사건은 형사전문 변호사인 전관의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기능한다. 물론 갈수록 불구속수사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⁴⁰⁾ 그래도 구속사건과 특수수사사건에서는 여전히 전관변호사가 판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특수수사사건의 경우 저인망식 수사에 의한 피의자 측과의 플리바게닝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면서 전관변호사가 개입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행태를 정상적인 수사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

법원의 경우 재판의 진행이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의 출석과 더불어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검사전관과 달리 전화변론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활동의 성질상 일단 변론의 명분을 위해서는 최소한 변호인 선임서에 형식적으로라도 전관의 성명은 기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피해자가 아닌 국가기관인 검사를 당사자로서 상대하는 형사사건에서는 상대방(피해자)에 대한 부담이 덜한 관계로 법관전관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지게 될 것임을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관변호사가 관련된 사건에서 법관에 대한 검사 및 피해자의 기피신청이나 법관 스스로의 회피제도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된다면 부적정한 보석이나 특히 법관들의 전횡으로까지 여겨지는 집행유

40) 검찰의 구속구공판 비율은 2002년 4.0%, 2003년 3.9%, 2004년 3.6%, 2005년 2.8%, 2006년 2.3%, 2007년 2.0%, 2008년 1.7%, 2009년 2.0%, 2010년 1.6%, 2011년 1.4%, 2012년 1.4%, 2013년 1.4%, 2014년 1.6%로 나타나고 있다(대검찰청, 『범죄분석』). 구속비율이 1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이 감소하였다.

예의 남발에 대한 견제책이 될 것이라고 본다.

한편 이러한 수사, 재판의 시스템 변화는 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실로 전관예우 현상은 사법절차가 투명하지 못한 시스템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많이 문제되는 것이 법관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 보석허가, 형의 양정 및 집행유예 선고라고 할 것인데, 국민들은 그 기준을 알 수가 없으며 그 결과에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검사의 경우에도 기소재량주의에 따른 지나친 재량권의 부여, 법 원칙에 충실해 보이지 않는 구속수사, 구형의 기준 등에 대하여 그 결정과정의 대부분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투명한 상황에서 검사와 법관 개인의 자의와 독선이 개입하고 이는 또 전관이 개입할 여지를 키우게 되는 것이다.⁴¹⁾ 이러한 기준은 오히려 규범의 준수자인 일반 국민이 알아야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5. 검사·법관의 이해관계인 접촉사실 신고 의무화

이 제도는 공직자 윤리법에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나 법관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인과 접촉시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혹은 보고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히 전관들의 전화변론⁴²⁾과 같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변론을 막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인으로는 사건관계인이나 사건수임변호사 혹은 그들의 부락을 전달하는 자 등이 될 것이다.

이 제도의 성패는 전관변호사의 부락을 받은 개개인인 검사나 법관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를 신고 혹은 보고하느냐에 달려있다. 친밀감을 앞세운 철저한 전관의 부탁이라는 점에서 보고의무가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신고의무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철저한 징계 등을 통하여 이를 담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문화가 점차 확산되면 결국에는 전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될 수밖에 없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은 법관 등의 대가성 외부강의 및 외부회의 등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제14조). 또한 2016년 11월

41) 같은 취지 한상희, 각주 1)의 글, 124면.

42) 전관의 변론 형태를 적절히 지적하는 것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발행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행태는 ‘전화 한 통화’로 불린다.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첫 사건’이라고 말하며 선처를 바라는 반면,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은 정식 선임계도 내지 않은 채 전호 한 통화로 사건을 해결하기 때문에 붙은 말이다.”라는 표현이 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996.), 151면.

30일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관예우의 경우 변호권을 앞세운 청탁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⁴³⁾ 한편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19대 국회에서 서기호 의원이 『변호사법 개정법률안』 제출을 통하여 발의한 바 있다.⁴⁴⁾

6. 윤리강령 등의 위반을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의 사유로 명시

현행 검사징계법은 징계사유로 ①『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③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제2조). 검사윤리강령의 내용은 위 3호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검사윤리강령상의 전관예우 관련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검사징계법상의 징계사유가 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법관징계법 또한 징계사유로 ①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②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 역시 위 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좀 더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행동강령의 규정준수를 강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7.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의 범위 확대

일본의 경우 형사사건의 70% 이상이 국선변호인에 의하여 변론이 이루어지므로 전관예우가 존재하기 어려운 구조로 작용한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2014년 한

43) 이 법에 대하여는 신고의무의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의 수위를 상향하는 등의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므로 이 법만으로는 포섭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으로 이광수, 전관예우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의 모색,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관예우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2015. 9.), 35면 참조.

44) 제36조의2(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보고의무)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자기가 취급하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자기가 근무하는 공간 외의 장소에서 면담 또는 접촉(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담 내용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7조(과태료) 위 조항의 위반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 동안 형사 제1심공판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율은 단독사건이 37.0%, 합의 사건이 41.7%로 나타나고 있다.⁴⁵⁾ 국선변호인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예산을 수반하게 되고 또한 국민들의 국선변호인에 대한 기대치가 미흡하다는 우리의 현실에서 의문이 있을 수도 있으나 국선변호인이 늘어날수록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8. 전관 등의 변호사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1) 퇴직 후 사건수임제한 범위의 확대

현행 변호사법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을 금지하고 있다(제31조제3항). 이와는 달리 유사한 취지를 담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17조). 변호사법의 이 규정은 퇴직지의 사건수임을 일정기간 제한함으로써 1993년 개정변호사법 이전에 존재하다가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삭제된 개업지 제한의 취지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⁶⁾ 따라서 이 조항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윤리법이나 개정 이전 변호사법의 개업지 제한기간인 3년으로 함이 바람직해 보인다.⁴⁷⁾ 그러나 이 방안 역시 검사나 법관의 기수문화나 계급이 존재하는 한 근본적인 치유책은 되지 못한다고 보지만 어느 정도 차단효과를 거둘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⁴⁸⁾

(2)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의 다양화

45)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5).

4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결 1989. 11. 20. 89헌가102)으로 3년간의 개업지 제한규정은 1993. 3. 10. 삭제되고, 대신 1년간의 수임 제한규정이 2011. 5. 17. 개정법에서 도입되었다.

47) 공직자 윤리법 규정과 같이 연장하자는 것으로 이광수, 각주 12)의 글, 29면 참조.

48) 퇴직한 판사·검사에 대하여 일정기간 영업범위의 제한을 통하여 해결하자는 한상희도 같은 취지이다. 한상희, 각주 1)의 글, 116면 이하 참조.

현행 법조윤리협회의 위원은 법원, 검찰 및 변호사협회에서 각 3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위원의 구성을 보면 검사출신 3명, 법관출신 2명, 대학교수 2명(이 중 1명은 검사출신), 그 외 변호사 2명 등 9명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들 중 6명이 전관의 신분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전관예우가 문제되더라도 태생적으로 협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을 수밖에 없다. 얼마 전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의 사건 수임내역 19건에 대하여 법조윤리협회가 직무상 비밀이라는 사유를 들어 자료공개를 거부하여 논란이 된 사안에서 이를 엿볼 수 있었다.⁴⁹⁾ 따라서 협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에 있어서 법조인 아닌 순수 민간인이 최소한 절반이 넘도록 구성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조윤리 문제는 법조인 내부분제의 차원을 넘어서 그 바깥의 일반시민의 체감에 의하여 판단되기 때문이다.

(3) 변호사협회의 역할 강화

전관예우 문제가 그 동안 지속되어 온 것은 근본적으로 사법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변호사단체가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탓도 있어 보인다. 이 문제는 단순히 ‘현관 대 변호사’ 혹은 ‘전관변호사 대 비전관변호사’의 문제가 아니라 ‘현관 및 (이를 등에 업고 있는 우세한) 전관인 변호사’ 대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비전관인 변호사’와의 경쟁구도였던 관계로 변호사단체 내부의 합의도출 또한 쉽지 않았던 관계로 근절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다. 공직자 윤리법에 더하여 부정청탁법이 탄생할 정도로 공직자에 대한 청렴성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에 있으며, 사법개혁 및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가 도입된 이후 변호사 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비전관변호사의 세력이 급성장하였다. 그 동안 전관들의 전유물이었던 대한변호사협회장 자리가 최근 들어 비전관 출신으로 바뀌고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30대의 젊은 비전관변호사로 바뀐 사실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런 변화 속에서 법조계의 중심도 자연히 비전관인 변호사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뿌리 깊

49) 변호사법 제89조의4는 공직퇴임변호사로 하여금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공직자윤리협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제1·3항).

은 전관예우의 폐해문제로부터 새로운 비전을 기대할 수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된 법조계의 중심에 서게 된 변호사단체는 그 위상에 걸맞게 ① 검사 및 법관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한 사법의 투명성 제고, ② 법조윤리교육의 강화를 통한 자정노력, ③ 전관예우의 표징 제한,⁵⁰⁾ ④ 변호사협회 자체의 징계 제도 재정비 등을 통하여 전관예우 문제를 억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V. 끝으로

전관예우는 전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현관의 문제로 접근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와 같은 검찰의 수사기관적 성격, 사법시험의 기수문화 및 계급의 존재, 평생근무에 맞게 정년이 보장되어 있으나 정년을 채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특이한 사법구조에서는 현관의 협조요인을 그대로 두고는 절대로 전관예우 문제가 근절될 수 없다. 이러한 사법구조에서 전관의 부정한 청탁에 대하여 현관은 예비전관으로서의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차원에서 조직 내부적으로 암암리에 전관에 협조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감이 있어 왔다. 즉 전관예우의 문제는 현직 법관·검사 및 전관인 변호사와 비전관인 변호사와의 갈등관계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전관예우의 문제는 지금까지와 같이 단순히 전관인 변호사 측의 문제로만 보아 변호사협회 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주체인 현관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장은 눈앞에 그 실현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국가사법체계의 효율성이라는 또 다른 부차적 효과를 수반하게 된다. 물론 변호사측의 문제는 이와 별도로 지금까지 시행해 온 제도를 꾸준히 개선·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수단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인식유형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⁵¹⁾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법조윤리

50) 법조브로커가 전관예우를 부추기는 한 원인이라는 신평의 지적과 같이(신평, 각주 8)의 글, 11면.) 이를 없애기 위하여 전관인 변호사 본인의 명함은 차치하고라도 사건수임을 위하여 그 영업사무원들의 명함에 전관의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제한 등은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51) 은종환·정광호,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유형의 탐색: Q-Methodology를 중심으로, 『행정논

의식 및 사회전반의 윤리의식을 제고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관예우의 문
제도 우리 사회문화의 한 병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충』 제53권 제2호(2015. 6.), 264면.

정운호 사건으로 본 ‘전관예우’

양은경 / 조선일보 법조전문 기자

1.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의 발단은 ‘손목 폭행’이다. 지난 4월 12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자신의 손목을 비틀어 폭행했다고 최유정 변호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사건결과에 불만족한 의뢰인의 변호사 폭행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정씨가 최 변호사에 지급한 수임료가 20억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정 대표는 2015년 12월 100억 원대의 상습도박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당시 지급한 수임료가 20억이라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집행유예가 성공할 경우 지급받기로 약속한 성공보수가 30억 원이라는 것이었다.

사실 배임이나 횡령이 수반되지 않은 도박사건 항소심, 그것도 자백사건에서 20억이라는 수임료는 믿을 수 없는 높은 수준이었다. 도대체, 무엇을 대가로 한 것인지에 일제히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최 변호사측은 “20억을 30명의 변호사에게, 16건의 사건에 나눠 썼다”고 해명했다. 혼자서 20억을 챙긴 게 절대 아니라는 취지다. 명목은 정 대표와 지인들의 개인비리 수습, 상장과 관련된 컨설팅, 도박 사건 항소심 양형사유 마련 등 다양했다. 이런 해명은 특이하게도 최 변호사 본인이 아닌 브로커 이모씨(당시에는

권용현 사무장 사칭)에 의해 이뤄졌다. 그는 “피해자가 없는 도박사건에서 양형 사유를 마련하는 게 무척 힘들었다. 대법관 출신을 동원해 해외 판례를 검토한 결과 단도박 모임 등에 기금을 기부한 경우 양형을 깎아 준 사례가 있어 이를 참고했다”고 했다. 그에 따라 정씨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도박중독 해결 등의 명목으로 기금 2억원을 기탁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8일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정씨에게 1심보다 4개월 감형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측의 해명이 사실이고 실제로 그와 같이 여러 사건, 여러 변호사에게 나눠 썼고 그에 부합하는 지출 증빙이 있다면 적어도 최변호사측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 법원도 일단 안도했다. 어쨌든 정씨의 보석신청을 기각했고 4개월이 깎이긴 했지만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안도는 오래 가지 못했다. 최 변호사측이 정운호 대표의 로비 의혹을 폭로하면서 한때 이 사건을 배당받았던 중앙지법 임모 부장판사가 브로커 이민희씨와 저녁 식사자리를 가진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임 부장판사는 사건이 자신에게 온 것을 알고 바로 다음날인 12월 30일 재배당을 신청했다. 그러나 브로커 이 씨에 이어 사기전력이 있는 골프강사 정 모 씨와의 해외여행까지 보도되자 사표를 냈고 현재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2. 검찰로 돌아간 화살

사건 초기부터 주목받던 부분은 법원보다는 오히려 검찰의 처분이었다. 검찰은 정 대표 도박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서도 1심보다 6개월이 깎인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고, 구속기소된 정씨가 보석신청을 하자 ‘보석 기각’이 아닌 ‘적의처리’ 즉 풀어 주어도 좋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초기에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2억원 기탁)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적의처리에 대해서도 “꼭 풀어달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적의처리’ 의견을 내는 데 있어서 최 변호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조선일보 5월 31일자 10면 ‘최유정의 ‘정운호 보석 로비’ 통했다?’ 기사 참조). 최 변호사가 올해 1월 19일 2심 재판부에 정 대표에 대한 보석을 청구했는데 검찰은 이를 뒤인 1월 21일 재판부에 ‘적의처리’ 의견을 제출했다. 검찰의 이 같은 의견은 최 변호사가 보석을 청구하기 10일 전인 1월 초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가 정 대표 사건을 수

사한 부장검사와 공판부장검사를 만났고 (두 부장검사와 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 이 자리에서 ‘정 대표 보석에 반대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두 부장검사는 1월 13일 검찰 정기인사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옮겼고 정 대표 사건 담당공판 검사에게 ‘적의처리’ 의견을 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적의처리 의견은 공판검사 전결사항인데 인사를 마치고 떠난 두 부장검사가 ‘적의처리’로 방향을 정해 전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결국 보석신청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검찰이 반대하지 않기로 의견조율이 됐고 최 변호사가 이러한 사정을 빌미로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약정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두 부장검사는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현재 정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관들의 통화내역을 조사 중이다.

검찰 처분에 대한 의문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우선 회사 대표의 100억 원대 상습도박 사건이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도박죄로만 기소된 부분도 의혹을 낳고 있다. 검찰은 당시 “정운호 대표의 개인돈이 워낙 많았고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충분했다”며 압수 수색 등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달 초 출소를 앞둔 정 대표는 결국 지난달 30일 회사자금 142억 원 횡령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검찰은 ‘142억은 도박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10월 도박 혐의 수사 때 ‘횡령은 찾아내지 못했다’는 입장과는 분명 모순되는 것이다(조선일보 5월 31일자 ‘7개월 전엔 정운호 횡령 안 했다더니...’). 그밖에 정 대표가 2012년 6월 마카오 카지노 3곳에서 300억대의 도박을 한 부분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된 과정도 의혹을 낳고 있다. 2014년 7월 경찰에서 ‘제보자가 수사협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무혐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그 해 11월 정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정씨측이 ‘카지노에 출입하지 않았다’는 호텔 직원의 진술 등을 첨부하자 검찰은 사건을 재개해 이 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최 변호사측 브로커 이 모 씨는 사건 초기 “정 대표 쪽이 거물급 전관인 홍만표 변호사 등을 통해 검찰에 로비하여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홍 변호사는 2015년 8월 정 대표의 상습도박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홍 변호사를 통한 검찰 측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동안 그의 오피스텔이 120여 채가 넘는다는 등의 보도가 이어졌지만 일단 구속 단계에서는 10억 원대 탈세, 로비명목 금품수수 5억 등으로 정리된 상태다.

3. 법원도 피할 수 없었던 구설수

최유정 변호사의 공소장 기재 범죄액수는 무려 100억 원이다. 50억이 정 대표 관련이고 나머지 50억은 이숨투자자문 송 모 대표로부터 받은 수입료 명목이다. 검찰은 50억 역시 정상적인 수입의 대가가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로비 명목이라고 봤다. 최 변호사는 2015년 6월경 수원지법 인베스트컴퍼니 사건 1심에서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억을, 같은 해 8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 대표를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10억을, 역시 같은 해 8월 말경 이숨투자자문 수사 무마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초기 정 대표 로비의혹에 맞서 ‘맞불성’으로 제기된 이숨투자자문 관련 의혹들이 결국 정 대표의 로비의혹보다 더 빨리 법정에 간 것이다.

정 대표와 관련해 한숨 돌렸던 법원도 이숨투자자문 사건에서는 구설수를 피하지 못했다. 문제된 판결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바꾼 ‘인베스트 사건’ 항소심이었다. ‘인베스트’라는 회사를 설립해 106억 원을 끌어 모은 유사수신 사건으로 2년간의 재판을 거쳐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불과 두 달도 안 돼 재판을 끝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다’며 송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하지만 송씨는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중앙지검에서 이숨투자자문 1400억 원대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숨 피해자들은 ‘사기 전과가 여러 번 있으니 풀어주면 안 된다’고 탄원서를 냈지만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해당 재판장은 “사건 기록을 보고 충분히 판단했다”는 입장만을 내놨다(조선일보 5월 14일자 ‘이숨사기 4년형→집유..100억변호사 최유정 로비였나’).

이 사건은 송창수 대표가 정 대표에게 최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현재까지 로비를 했다는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사건을 단지 ‘항소심에서 피해변제가 됐고 반성한다’며 집행유예를 한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최 변호사는 이숨 사건에서도 전화변론을 했지만 결국 송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최 변호사와 관련해 또 하나 문제 되는 부분은 연고관계에 따른 사건 수임이다. 최 변호사는 주로 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고교 동문 등 개인적 연고관계가 있는 판사들이 담당할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선일보 5월 16일

자 ‘최유정, 연수원 동기 팔아 사건 쓸어 담았나’). 최 변호사가 개인 사무소를 차린 2014년 12월 이후의 형사판결 26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중 11건이 사법연수원 동기, 1건은 고교 선배가 맡은 사건이었다. 최 변호사는 이중 절반인 6건에서 감형 또는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그 결과가 개인적 친분이나 전관예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 인연이 있는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해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4. 마치며

현재로서는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전관예우의 정황은 없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모든 과정은 법대로 투명하게 처리됐다’는 해명을 믿는 국민 또한 없을 것이다. 브로커도 아닌 변호사가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기소 혹은 구속된 흔치 않은 사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사 및 재판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로비가 통했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지점은 ‘로비가 통한다’는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아무리 글을 잘 쓰고 변론을 잘 하고 사건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습역을 지불할 의뢰인은 없다. 갑남을녀도 아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장품 회사의 대표와 적지 않은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유사수신업체 대표가 수습역을 쾌척한 데는 모종의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 믿음의 실체에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전관예우 해결의 지름길이 아닐까 한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연고관계’의 해결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재판부와 변호인이 특별한 연고관계가 있다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유이다. 무죄가 나올 사건이어서 무죄판결이 나오고, 형이 깎일 만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충분하더라도 그 의미가 순수하게 전달되기는 힘들다. 변호사도 선임 단계에서부터 연고관계를 내세웠을 공산이 크고, 의뢰인은 의뢰인대로 ‘역시 판사와 친한 변호사를 선임하기 잘했다’고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변호사와 해당 재판부 재판장이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의 동기, 동창이거나 사법연수원, 로스쿨 동기인 경우, 같은 법원 등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재판부가 재배당을 요청하면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1년 가까이 시행중이다. 시행 범위가 형사합의부에 한정돼 있고 일부에서는 재판부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연고관계를 선택하는 ‘포럼 쇼핑’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시장에 ‘친한 변호사를 선임했더니 아예 재판부가 바뀌어 버리더라’라는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기능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불어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진행경과를 검색할 수 있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그런 시스템이 없다. 어떤 사건에 어떤 변호인이 선임됐는지, 어떤 수사부에 배당돼 어떻게 처리됐는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면 의혹과 뒷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다. 수사의 밀행성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 투명하게 절차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서기호 / 前 19대 국회의원

■ 참고자료

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대표발의, 제17079호)
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대표발의, 제17079호) 검토보고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79
----------	-------

발의연월일 : 2015. 10. 6.

발 의 자 : 서기호 · 박원석 · 이개호
정진후 · 심상정 · 김제남
홍영표 · 신경민 · 서영교
최동익 의원(10인)

제안이유

전관예우의 폐해 근절은 사법정의와 법질서확립을 위한 법조계 최대의 과제임. 현행법상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은 단순한 행정절차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전관예우의 폐해 중 하나인 이른바 “전화변론”과 같이 내사사건 무마 등을 조건으로 고액의 선임료를 수수하는 음성적·탈법적인 변호활동을 방지하여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하고자 2007년 신설된 규정임.

그러나 최근까지도 공직퇴임변호사들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현행법상의 실질적인 규범력에 대한 비판이 야기됨.

이에 변호사선임서등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변호사의 사건수임 및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당한 사유없이 변호사선임서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3조제4호 신설).

나. 변호사선임서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등을 처벌하는 경우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6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4호부터 제6호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제116조 전단 중 “제111조 또는”을 “제111조, 제113조제4호 또는”으로 한다.

제11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4. ~ 6. (생 략)	제113조(벌칙)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 (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u>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116조(몰수·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 제1호, 제110조, <u>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u>	제116조(몰수·추징) ----- ----- ----- ----- ----- <u>제111조, 제113조제4호 또는</u> ----- ----- ----- -----. ----- -----.
제117조(과태료) ① (생 략)	제11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3. <u>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 (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u> 4. ~ 8. (생략) ③ ~ ⑦ (생략)	음) ② ----- ----- -----. 1. · 2. (현행과 같음) <u><삭제></u> 4. ~ 8.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대표발의, 제17079호)

검 토 보 고 서

2015.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재 주

이 법률안은 2015년 10월 6일 서기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다음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전관예우의 폐해 근절은 사법정의와 법질서확립을 위한 법조계 최대의 과제임. 현행법상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은 단순한 행정절차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전관예우의 폐해 중 하나인 이른바 “전화변론”과 같이 내사사건 무마 등을 조건으로 고액의 선임료를 수수하는 음성적·탈법적인 변호활동을 방지하여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하고자 2007년 신설된 규정임.

그러나 최근까지도 공직퇴임변호사들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현행법상의 실질적인 규범력에 대한 비판이 야기됨.

이에 변호사선임서등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변호사의 사건수임 및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당한 사유없이 변호사선임서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3조제4호 신설).

나. 변호사선임서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등을 처벌하는 경우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6조).

II.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소송대리 또는 변호를 하는 것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⁵²⁾ 개정안은 변호사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소송대리 또는 변호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형사처벌하고 이로 인한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 6. (생략)	제113조(벌칙)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 (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u>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116조(몰수·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	제116조(몰수·추징) ----- ----- ----- -----

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11조, 제113조제4호 또는----- ----- ----- ----- -----.
제117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u>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u> 4. ~ 8. (생략) ③ ~ ⑦ (생략)	제11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4. ~ 8.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52) 「변호사법」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內査)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변호사법」 제1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 일반적으로 행정상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형사처벌을 가할 것인지 또는 행정질서벌(과태료)을 가할 것인지는 위법행위의 중대성, 침해되는 법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 할 것임.

□ 변호인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행위 금지에 관한 현행법 제29조의2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고액의 선임료를 수수한 뒤 담당자에게 접촉하는 소위 ‘몰래변론’, ‘전화변론’ 등 음성적·탈법적 변호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 도입된 규정이나, 위반시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개정안은 최근까지도 전관 변호사들이 변호사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사건 담당자들에게 청탁을 하였다는 사회적 의혹이 지속됨에 따라 변호인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행위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매우 타당하다 할 것임.

□ 다만, 행정형벌제도는 원칙적으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최후적·보충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다른 제재수단으로는 동일한 행정목적 달성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야 함.⁵³⁾ 따라서 단순히 변호인선임서 등의 제출을 누락하였을 뿐인지 조

53) 헌법재판소 1995. 3. 23. 92헌가14 결정 참조.

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자칫 과도한 처벌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문 의 처
오지원 입법조사관(788-2183)

토 론

질 의

※ 질의사항을 작성해 스태프에게 제출해주시면 종합토론 시간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서울지방법원변호사회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 좌담회

발행일 2016. 6. 9.

발행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서울지방법원변호사회

담 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간사 02-723-0666 jw@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서울지방법원변호사회 2016

※ 본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참여연대 www.peoplepower21.org **서울지방법원변호사회** www.seoulbar.or.kr

전 관 예 우 와

법 조 비 리 문 제

진 단 과

해 결

모 색

공 개

좌 답 회